

# 林業振興促進地域開發로 木材供給基地 마련

金廷柱 / 山林廳法務擔當官

〈前號에서 계속〉

— 第20條 (保全林地의 地目變更 禁止等) —

保全林地는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를 分割하지 못하도록 分割禁止規定 新設

하여 存置

最近 投機性 林野賣買가 急增하면서 保全林地의 小面積 分割賣買 現象이 많아지고 있는데 小面積 分割林野의 大部分이 林野投機 또는 非生産 目的으로 所有되어 林業經營 構造의 惡化와 아울러 經營放置 山林이 增加되는 趨勢이다.

특히 保全林地는 木材自給을 爲한 經營對象 林地라는 點에서 今後 小面積分割에 의한 保全林地의 零細化, 非生産地化 防止를 爲하여는 分割規制가 不可避한 實情이다.

分割禁止 面積은 實情에 맞도록 彈力性 있게 部令으로 定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指定開發制度中 一般指定開發地域指定制度는 對象林地에 對한 造林이 完了되어 現在에 이르러서는 거의 實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代替되는 制度로 後述하는 林業振興促進地域 開發制度를 新設하고 資金 및 技術을 集中支援하여 私有林 經營을 活性化하도록 하기 爲하여 一般指定開發制度는 廢止하고 山主自率 經營體制로 轉換하였다.

다만, 山林을 長期間에 걸쳐 大團地로 開發하게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山林地域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 特殊開發地域으로 指定하는 特殊開發地域指定制度는 存置하였고 이에 附隨되는 從前의 規定은 大幅 整理하여 單純化하였다.

— 第21條 (特殊開發地域의 指定) —

- 山林所有規模가 零細하여 山林所有者가 任意로 開發할 경우에는 集團의 山林開發에 支障이 있는 山林地域에對하여 一般開發地域으로 指定하고 市長·郡守 開發命令에 따라 開發하는 從後의 一般指定開發制度 廢止
- 特殊開發地域의 指定開發制度는 單純化

— 第25條~第29條 (林業振興促進地域의 開發等) —

- 山林廳長은 山地資源化를 促進하기 爲하여 造林·育林·伐採·林道施設·山林保護 및 林産物生産等 山林의 集中開發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一定한 山林地域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林業振興을 促進하는 地域(以下“林

業振興促進地域”이라 한다) 으로 指定할 수 있다.

- 山林廳長은 林業振興促進地域에 對하여 林業振興計劃을 作成하고 이를 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市·道知事は 林業振興促進地域의 開發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여 林業振興地域의 一部에 對하여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適正規模의 經營單位로 林業振興을 促進하는 團地(以下 “林業振興團地”라 한다)를 設定하여야 한다.
- 市長·郡守는 林業振興團地에 對하여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林業振興團地計劃을 作成하고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林業振興地域의 山林經營에 對하여는 다른 山林事業에 優先하여 必要한 資金과 技術을 支援할 수 있다라고 林業振興促進地域開發制度 關聯規定 新設

山林面積率이 높은 生産林業 地域을 林業振興促進地域으로 指定하고 이 地域의 山林經營에 對하여는 資金과 技術, 稅制와 行政力을 集中支援하여 長期的인 木材安定供給基地로 育成하고자 하는 것이 林業振興促進地域 開發制度 實施의 目的이다.

林業振興促進地域開發制度는 山地資源化 10個年計劃의 重點事業으로서 이미 相當한 進陟이 있는데 開發便宜를 圖謀하기 氣하여 市長·郡守는 同地域을 適正山林經營規模인 林業振興團地로 區分하여 林業振興團地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하도록 하였다.

林業振興促進地域開發制度를 定着 發展시키기 爲하여는 示範的인 協業經營의 實施, 經濟林造成擴大, 林道網構築, 林業機

械化 및 專門作業團 運營으로 經營基盤을 現代化 하는等 創發的인 새로운 施策을 開發하여야 될 것이다.

### 第30條(林産物所得源의 開發)

山林廳長은 山林所得의 增大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品目과 區域을 定하여 林産物所得源의 開發을 支援·育成할 수 있다라고 林産物所得源開發育成 規定 新設

林業經營의 長期性 低受益性을 克復하기 爲하여 短期的인 林産物所得源의 開發育成이 時急한 課題이다.

따라서 改正 山林法에서는 短期的인 林産物所得源 開發의 支援·育成에 必要한 根據規定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林産物主産團地 育成概念으로 볼 수 있다.

地域別로 特産林産物의 主産團地를 指定하고 資金·技術을 集中支援하되 主要品目은 표고, 송이, 山菜, 藥草, 잣, 밤, 등이 될 것이다.

### 第31條~第33條(自然休養林의 指定과 造成等)

- 山林廳長은 國民의 保健休養·情緒涵養 및 自然學習教育和 山林所有者의 所得 增大에 이바지 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景觀이 秀麗한 山林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山林을 自然休養林(以下 “休養林”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의 指定이 制限을 받는 山林의 경우에는 休養林을 指定할 때에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

하여야 한다.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을 指定한 때에는 當해 山林의 所有者(山林을 사용·收益할 수 있는者を 包含한다)에 대하여 施設의 設置등 休養林의 造成을 勸告할 수 있다.

-山林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休養林안에 施設을 設置하는등 休養林을 造成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造成 計劃을 작성하여 山林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休養林을 造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各號의 施設別로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散策路·野營場등 便益施設
2. 어린이놀이터·體力鍛鍊施設등 體育施設
3. 炊事場·汚物處理場등 衛生施設
4. 自然觀察園·野外教室등 教育施設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所有者는 休養林의 效率的인 造成 또는 管理·運營을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의 造成 또는 管理·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休養林의 管理, 運營者는 休養林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라고 自然休養林 關聯規定 新設

自然休養林 造成制度는 日本등 林業先進國에서는 오래전부터 實施하고 있는 制度로서 國民의 保健休養과 레저需要 充足을 爲하여 劃期的인 制度이다.

自然休養林은 山水景觀이 좋고 多數國民

이 利用하는데 便利한 山林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自然休養林은 自然公園과 類似的한 點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點에서 自然公園과는 區分할 수 있다.

即 自然公園은 山林經營 制限을 받고 休息爲主로 호텔等 大規模 集團施設을 하는데 비하여 自然休養林은 景觀이 秀麗한 山林内에서 山林經營과 林産物 生産을 繼續하면서 休息과 自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散策路, 簡易運動施設등 最小限의 基本休養施設을 하여 國民의 休息空間으로 活用토록 하는 것이 다르다.

自然休養林 造成事業은 山地資源化10年計劃의 重點施策으로 國公有林을 優先적으로 推進하고 있으나 年次的으로 私有林에도 擴大하고 政府의 豫算支援이 強化 되어야 할 것이다.

#### 第34條(樹木園의 造成등)

-山林所有者는 山林에 對한 自然學習教育·學術研究 및 山林史料의 보존·展示를 爲하여 山林안에 樹木園을 造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制限을 받는 山林의 경우에는 樹木園을 造成할 때에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樹木園을 造成할 者는 樹木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의 徵收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한다고 樹木園 關聯規定 新設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樹木園은 林業研究院에서 運營하는 光陵樹木園을 例로 들 수

있다. 樹木園은 山林에 對한 自然學習 등 國民教育場으로 活用하기 爲하여 地域別 鄉土樹種을 保存하여 山林史料의 保存展示가 必要하다.

國公有林은 勿論 私有林에도 適地에 樹木園이 많이 造成되도록 政策的 配慮가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

—第35條(林產物 流通構造의 改善)—

- 山林廳長은 林產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爲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林產物流通施設의 設置·運營 등 流通構造의 改善에 關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產物 流通構造의 개선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한다라고 關聯規定新設

林產物의 生産量增大와 더불어 林產物 流通業務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있다. 그러나 山林法上 林產物流通構造 改善에 必要한 法の 根據를 마련하여 林產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圖謀코자 하는 것이다.

現在 山林組合中央會가 運營하고 있는 林產物直賣場과 木材集荷場이외에도 林產物의 流通構造를 體系化 乃至 改善해 나갈 수 있는 對策이 必要하다.

—第40條(協業經營의 促進)—

山林廳長은 林業振興促進地域의 效率的인 開發과 私有林의 合理的인 經營을 誘導하기 爲하여 山林所有者 相互間의 協業으로 山林을 經營하도록 勸獎하는 등 協業經營을 促進하는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라고 協業經營 規定改正

協業經營事業은 山主들의 協同組織을 통한 共同事業으로 私有林經營 構造를 改善하고 林業投資를 活性化 하기 爲한 것이다.

從前의 規定에서는 零細私有林 所有者에 限하여 造林事業에 對하여서만 協業을 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어 協業經營 本來의 趣旨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改善하여 모든 山林所有者가 造林·育林·林道施設 등 모든 山林事業에 對하여 協業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林業振興促進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協業經營事業이 定着되어 山林經營이 더욱 活性化 될것의 期待된다.

—第42條(産業備林의 所有)—

-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林產物을 利用 또는 加工하는 者에 對하여 産業備林으로서 山林을 所有할 것을 命할 수 있던것을 所有勸獎制度로 改正
- 山林廳長은 産業備林所有命令을 받은 者가 所有期間內에 産業備林을 所有하지 아니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有林 또는 公有林에 造林할 것을 命할 수 있는 國·公有林內 造林命令制度 廢止

山業備林 所有制度는 山林資源이 減小를 防止하기 爲하여 山林을 所有토록 하는 制度이나 所有를 하지 아니하였을때 이에 對한 制裁根據가 없는 등 命令制度의 實效性이 없으므로 所有命令制度를 所有勸獎制度로 改善하여 林產物利用 또는 加工業體의 自率的인 産業備林所有를 誘導하기 爲한 것이다.